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3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김영옥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경훈,
김규남, 김길영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태수, 김현재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서상열, 신복자, 유만희,
윤기섭, 이상욱, 이성배,
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
이희원, 임춘대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9
명)

1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는 독립운동, 국가수호,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로, 그 공훈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존중되어야 함
-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생존 시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보훈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받고 사망 이후 유족의 현실적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
- 이에 보훈대상자가 사망시,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족이 겪는 장례 절차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, 보훈대상자가 끝까지 예우받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희생 · 공헌자가 사망한 경우,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(제7조제5항)

나.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에 따라 지원방법 및 절차를 시장이 정하도록 함 (제7조제8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가보훈기본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”을 “사망위로금 20만원과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”로 한다.

제7조제8항 중 “사망위로금 및 제7항의”를 “사망위로금 및 장례식장 이용료, 제7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</p> <p>⑤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희생·공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<u>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망위로금 20만원과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<p>⑧ 제3항의 생활보조수당, 제4항의 보훈예우수당, 제5항의 <u>사망위로금 및 제7항의 위문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	<p>⑧ ----- ----- <u>사망위로금 및 장례식장 이용료, 제7항에 따른 위문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제5항	○	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한 희생·공헌자 대상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 지원비용 발생 ⇒ 총 125,000천원 소요 예상(연평균 25,000천원 소요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 지원비용(안 제7조)

나. 전제

- (지 원 금) 1인 250천원(P) 지원 가정
- (대 상) 연간 총 100명(Q) 가정
- (발생기간) 2026년부터 비용 발생,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발생
- (미 고려) 향후 사업 추가확대 여부,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복지실 유선문의 및 제공자료¹⁾ 등을 토대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총 125,000천원(연평균 25,000천원 소요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○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 지원비용(안 제7조)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25,000
	소계(a)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25,000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25,000

1) [예산액과의 정합성 제고 차원] 추계 객관성 측면에서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주요요인(정책적 영역 등)을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추계액과 향후 예산액간 정합성(추계제도 본연의 목적 부합)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므로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제공자료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소요액을 추산

4. 덧붙이는 의견

- 본 추정액은 2026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해서만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사업확대 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현

추계분석관 손재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 지원비용(안 제7조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**총 125,000천원**(연평균 25,000천원 × 5년)

나. 연평균 총 소요비용 = 25,000천원

$$\begin{aligned} &= 1인당 장례식장 이용료 지원금(P) \times 지원대상(Q) \\ &= 250천원 \times 100명 \end{aligned}$$